

「2026년도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공고

2026년도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산업체는 2026.2.26.(목)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우수한 녹색 기술·장비(소·부·장 포함)를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실증(기술·사업성 검증)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
- ※ 추진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한국환경 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환경산업 환경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2 공고 개요

- **(사업 명)** 2026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
※ 본 사업의 지원 유형 중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지원」 사업은 별도의 공고문 참조
- **(주최/주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전담기관’)
- **(사업 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6. 11. 30. (단년도, 다년도 1단계)
※ 다년도 사업을 신청한 업체는 1단계의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협약 별도 추진
- **(사업 비)** 총 3,320,000,000원 내외
- **(지원 대상)** 우수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중, 바이어의 구매 조건이나 기술적 특성상 현지에서의 일정 규모 이상 실증이 필수적인 기업
* (우수 녹색기술) 법정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전통적 오염처리부터 환경성능을 향상시킨 기술 장차시스템 가운데 수출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

○ (신청 자격)

- 지원하려는 과제와 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소유권 또는 실시권 등을 확보한 업체
- 향후 신청기업과 공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진출대상국의 법인형 사업파트너(현지위탁기관)* 확보 필수
 - * 향후 신청기업과 공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진출대상국의 법인형 사업파트너를 의미하며, 위탁기관의 참여도(역할, 비용분담, 통관부가세 납부의지 등)는 가점 및 선정평가항목에 포함(일반 용역기관 참여불가)
- 기타, 사업안내서(별첨)의 ‘5. 사업참여 제한사항’ 참고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파일럿* 설계·제작, 현지 운반·설치·운영·홍보, 현지 활동비(항공권, 체류비, 임차료 등) 등
 - * 실제 규모의 장비나 공정 등을 도입하기 전에 작은 규모로 실험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 제품, 시스템
- 과제당 최대 4.5억의 정부보조금 지원

모집구분	주요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주4)}	
단년도 사업 ^{주1), 주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 파일럿 설계·제작 - 현지 운반·설치·운영 등 		협약일 ~ '26.11.30.	최대 4.5억원	
다년도 사업 ^{주3)}	1단계 (1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 파일럿 설계·제작 등 	협약일 ~ '26.11.30.	최대 2.8억원	총 최대 4.5억원
	2단계 (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운반·설치·운영 등 	'27.1.1. ~ 10.31.	최대 1.7억원	

주1) 단년도 사업은 협약기간 내에 파일럿 제작과 현지실증이 필요한 업체가 신청 가능

주2) 현지실증용 파일럿 장치 등이 준비된 경우도 단년도 사업으로 신청 가능

주3) 다년도 사업은 각 단계별 협약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되 1단계 사업결과에 대한 중간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2단계 계속지원

주4) 최종 지원금액(국고보조금)은 선정평가순위, 신청 아이템의 유형(기계장비, IoT장비 등), 사업비 활용계획을 종합고려하여 전담기관에서 결정

○ '26년도 중점 추진 방향

- **(전용 트랙 신설)**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정 기조에 부응하여, '에너지-환경 융합형 기술*' 섹터를 별도로 배정하고 전체 선정 과제 규모의 30% 내외를 우선 선발

* 전용 트랙의 대상범주는 다음과 같고, 이외의 기술은 일반 섹터에서 평가

- 1) (단순 인프라 배제) 발전 등 단순 에너지 생산 인프라가 아닌, 에너자-물, 에너자-자원순환 등 환경 시설의 에너지 자립과 효율을 높이는 기술
- 2) (우수성능 및 탄소저감 동시 달성) 산업시설 등에 적용되어 기존 환경기술 이상의 처리 성능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현장 맞춤형 탄소중립 실현 기술
- 3) (순환경 경제 기술) 폐기물의 단순 처리를 넘어 에너지, 자원, 탄소 저감이 유력한 순환경 경제 구축 기술

- **(시장검증 고도화)** 단순 성능 확인을 넘어 현지 발주처 수요 적합성, 사업화 계획, 유지·관리 체계 등 사업화 필수 요건을 포괄적으로 검토

- **(밀착 지원)** 환경산업체의 역량을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통관, 사업비 집행, 국제특허 업무 등 사업추진상의 행정적 애로사항을 전담기관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기업을 밀착 지원

○ (평가 방향) 아이템과 진출국의 특성에 따른 유형별 맞춤 평가

유형	분류 기준	중점 평가 요소
현지화	현지의 정책·문화·경제 여건에 적합하도록 개조하여 환경문제가 만연한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술·제품·서비스	현지실정을 고려한 사업화 계획과 이에 근거한 사업 목표
혁신형	新환경규제 대응 또는 혁신 기술에 기반하여 선진국 등 우위 기술을 추구하는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술·제품·서비스	바이어 요구사항과 구매조건의 구체성 및 이에 근거한 사업 목표
최적화	측정·모니터링·인공지능 등의 IT 솔루션에 기반하여 환경재해를 예측하거나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제품·서비스	편의성, 환경개선도 및 향후 사업 확산 가능성(설치·유지 비용, 사업모델 등) 중점 평가

※ 상기 선정 방향은 '에너지-환경 융합형 기술' 섹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자기부담금)** 신청업체의 성격에 따라 최저부담금 결정

신청업체 분류	국고보조금 지원범위	자기부담금 중 현금비율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70% 이내	20% 이상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과 컨소시엄 (중소기업이 대표기업이어야 함)	총 사업비의 60% 이내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내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컨소시엄 (중견기업이 대표기업이어야 함)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총 사업비란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의 합산 금액

<중소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 구성 예시>

총 사업비 구성 (국고보조금을 2.8억 원 신청하는 경우)		
총사업비 = $\frac{\text{국고보조금}}{\text{국고보조금 지원범위 비율}}$ (사례 : 400,000,000원 = $\frac{280,000,000\text{원}}{0.7}$)		
총 사업비	400,000,000원	
국고보조금	280,000,000원	
	120,000,000원	
최소 자기부담금	최소 현금비율(20%)	최소 현물비율(80%)
	24,000,000원	96,000,000원

3

추진일정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6. 1. 26(월) ~ 2026. 02. 26(목) 24시 까지
 - **(사업설명회)** 2026. 1. 30.(금) (온라인, 참여방법은 사업신청 시스템에 별도 공지)
 - **(서류검토)** 신청접수 후 2주이내
 - **(선정평가)** 서류검토 후 2주이내
 - **(결과통보)** 선정평가 후 2주이내
 - **(협약체결)** 협약서류 접수 후 2주이내
 - **(접수방법)** 사업안내서(별첨)의 양식을 사용하여 온라인 제출(사업책임자의 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모바일 OTP로 회원가입 필요, <https://www.bojo.go.kr/bojo.do>)
- ※ 상기 세부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관련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 정영도 선임연구원 (032) 540-2178, ydjung@keiti.re.kr
- 강휘민 전문연구원 (032) 540-2186, hwimin@keiti.re.kr